

#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제도 안내

※2020년 5월 1일시점 정보이므로 앞으로 수시로 갱신됩니다.

## 자금(생활비나 사업 자금) 확보가 곤란할 때

### 1. 주거확보급부금(집세) <住宅確保給付金(家賃)>

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 등에 기인된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어 이직 또는 폐업에 이르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주택상실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일정한 기간 집세 상당액을 지급할수 있도록 기존제도가 확충되었습니다.

p.1

### 2. 긴급소액자금·종합지원자금(생활비) <緊急小口資金・総合支援資金(生活費)>

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인한 휴업이나 실업등으로 생활자금에 대한 고충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례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p.2

### 3. 지속화급부금(중견·중소법인, 개인사업자 대상) <持続化給付金(中堅・中小法人、個人事業者向け)>

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특히 크게 영향을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속을 받드려 드리며 사업재기의 자금이 되도록 사업전반에 널리 이용할수있는 급부금을 지급합니다.

p.3

### 4. 실질 무이자·무담보 융자(사업자금) <実質無利子・無担保融資(事業資金)>

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상황이 악화된 사업성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·무이자로 사업자금 융자를 실시합니다.

p.4

### 5. 특별정액급부금 <特別定額給付金>

기준일(2020년 4월 27일) 현재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.

※신청기간은 신청접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

### 6. 아이키우기세대 임시특별급부금(아이키우기세대 대상) <子育て世帯への臨時特別給付金(子育て世帯向け)>

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아이키우기 세대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(본칙 지급)을 받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임시적으로 특별급부금(일시금)을 지급합니다.

### 7. 사회보험료 등 유예 <社会保険料等の猶予>

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나 국세, 공공 요금의 지불, 납부 유예가 인정될 경우가 있습니다.

### 8. 생활곤궁자 자립상담지원사업 <生活困窮者自立相談支援事業>

여러가지 과제를 안은 생활곤궁자들에게 매사람마다에 적합한 종합적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### 9. 생활보호 <生活保護>

현재 생활곤궁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해드리며 자립을 도와드릴 목적으로 곤궁정도에 따른 생활비, 집세 등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【비고】 상기 5~9에 관한 문의는 가나가와 외국인 거주지원센터에 연락해 주세요.

## 주거확보 급부금 <住居確保給付金 (家賃)>

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 등에 기인된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어 이직 또는 폐업에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주택상실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일정한 기간 집세 상당액을 지급할수 있도록 기존제도가 확충되었습니다.

### ■주거확보 급부금

#### 지급 대상(현행)

· 이직·폐업 후 2년 이내인 분

#### 제도 확대 후

· 이직·폐업 후 2년 이내인 분  
· 급여 등을 얻는 기회가 감소된 이유가 해당개인의 책임, 사정에 기인되지 않으며 이직이나 폐업과 동등한 상황에 놓여진 분

**대상자** 이직·폐업한 후 2년 이내 혹은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이직이나 폐업과 동등한 상황에 놓여진 분

**지급 기간** 원칙적으로 3개월 (구직 활동 등을 성실하게 하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(최대 지급 기간 9개월까지))

**지급 금액** (도쿄도 특별구의 기준) 단신 세대 : 53,700 엔, 2명 세대 : 64,000 엔, 3명 세대 : 69,800 엔

#### 지급 조건

○수입 조건 : 세대수입 합계금액이 시정촌민세 균등할(市町村民税均等割)이 비과세로 되는 수입금액 1/12 + 집세(주택부조 특별기준액이 상한)을 넘지 않는다.

(도쿄도 특별구의 기준) 단신 세대 : 13.8 만엔, 2명 세대 : 19.4 만엔, 3명세대 : 24.1 만엔

○자산 조건 : 세대의 예금합계금액이 하기를 넘지 않는다. (단 100 만엔을 넘지 않는 액수)

(도쿄도 특별구의 기준) 단신 세대 : 50.4 만엔, 2명 세대 : 78 만엔, 3명 세대 : 100 만엔

○구직활동 등 요건 : 성실하게 열심히 구직활동 하는 것

※헬로 워크에 구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(4 월 30 일~)



#### ●문의·신청은

**거주하는 시정촌 자립상담지원창구로**

전국 연락처 일람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000624516.pdf>



## 긴급소액자금 · 종합지원자금(생활비) <緊急小口資金 · 総合支援資金(生活費)>

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인한 휴업이나 실업등으로 생활자금에 대한 고충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례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### ■ 긴급소액자금(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분 [주로 휴업하신 분])

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소액 비용을 대출합니다.

**대상자**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 인한 휴업 등에 따라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긴급 또는 일시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대출이 필요한 세대  
 ※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 인한 수입감소라면 휴업상태가 아니어도 대상이 됩니다.

**대출 상한액** 학교 등 휴업, 개인사업자 등 특례인 경우 20 만엔 이내  
 그외 경우 10 만엔 이내

**보류 기간** 1 년 이내

**상환 기간** 2 년 이내 **대출 이자 · 보증인** 무이자 · 불필요

### ■ 종합지원자금(생활재건이 필요할 분 [주로 실업한 분들])

생활재건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대출합니다.

**대상자**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을 받고 수입 감소나 실업 등에 의해 생활곤궁상태에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세대.  
 ※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 수입 감소의 이유인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어도 대상이 됩니다.

**대출 상한액** (2 명 이상) 한달 20 만엔 이내  
 (단신) 한달 15 만엔 이내 (대출 기간 : 원칙상 3 개월 이내)

**보류 기간** 1 년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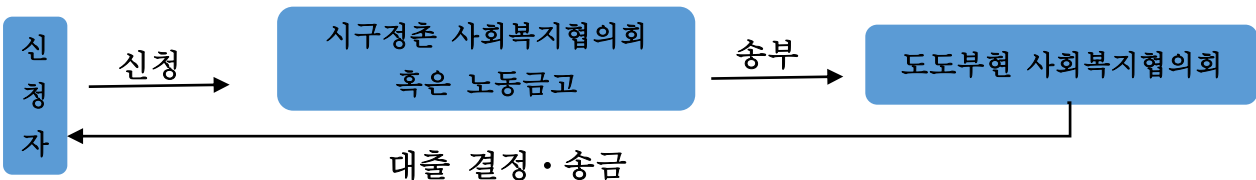
**상환 기간** 10 년 이내 **대출 이자 · 보증인** 무이자 · 불필요

\*1 이번 특례조치는 새로 상환시에 있어서 소득 감소가 여전한 경우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상환을 면제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.

\*2 먼저 긴급소액자금으로 최대 20 만엔을 대출 받은 후 여전히 수입 감소가 계속될 경우, 종합지원자금을 신청하여 최대 20 만엔의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. 그 후 수입감소가 여전한 경우에는 아울러 종합지원자금에서 2 인세대이상인 경우에 최대 20 만엔을 3 개월간 대출받는 것으로 대응.

(최대 80 만엔)

### 대출 수속 절차



● 일반적인 문의는 **상담 콜센터**  
 0 1 2 0 - 4 6 - 1 9 9 9 ※9:00~21:00 (토일 · 공휴일도 포함)

● 신청은 **거주하는 시구청촌 사회복지협의회 혹은 노동금고**

※우송신청도 할수 있습니다.

※많은 경우 도도부현 · 지정도시 사협 홈페이지에서 “링크”나 “시정촌 · 구사협 일람(명부)”에 시구청촌 사협 홈페이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 QR 코드로 확인하세요.  
 게재 안된 경우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지속화 급부금 <持続化給付金>

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, 특히 크게 영향을 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속을 받들어드리며 사업재기의 자금이 되도록 사업전반에 널리 이용할수 있는 급부금을 지급합니다.

### ■ 급부 대상자

○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

한달간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매출과 비교하여 **50%이상** 감소된 사업자

※자본금 10 억엔 이상인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·중소법인,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
또한 의료법인, 농업법인, NPO 법인 등 회사이외의 법인 등들도 폭을 넓혀 대상으로 합니다.

### ■ 급부액

법인은 **200 만엔**, 개인사업자는 **100 만엔**

(단, 지난해 1년간 매출보다 감소한 금액이 상한 금액입니다.)

매출 감소 금액 계산 방법

지난해 총매출(사업 수입) - (지난해 같은 달 매출보다 50% 감소한 매출 × 12 개월)

※금액은 10 만엔 단위, 10 만엔 미만은 버립니다.



### ●문의처

**중소기업 금융 · 지급금 상담 창구 0570-783183**

※평일 · 토일, 공휴일 9 시 00 분~19 시 00 분

이 제도의 상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중입니다. 신청 · 급부 시작시기, 혹은 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 문의가 많은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해에 대하여 경제산업성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

이하 URL, 혹은 오른쪽 QR 코드에서 확인하세요.

<http://www.meti.go.jp/covid-19/>



## 실질적 무이자·무담보 용자(사업자금) < 實質無利子・無担保融資 (事業資金) >

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상황이 악화된 사업성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·무이자로 사업자금 용자를 실시합니다.  
「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」과 「특별이자 보급제도」를 함께 이용하여 실질적인 무이자 대출이 실현되며 사업자금용통을 지원합니다.

### 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

▶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업적 악화(최근 한달동안의 매출이 지난해 혹은 제작년 동기 매출에 비해 5%이상 감소한 경우 등)된 사업자(사업성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)를 대상으로 용자특별기준제도를 창설하였습니다. 신용성이나 담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률금리를 정하고 대출 후 3년까지 금리를 0.9% 인하하여 실시합니다.  
※개인사업자(사업성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하며 소규모로 제한됨)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을 가지고서도 유연하게 대응함.

자금 사용범위 | 사업운영자금, 설비자금      담보 | 무담보

대출 기간 | 설비비 20년 이내, 운영비 15년 이내      그 중 거치기간 | 5년 이내

용자 제한액(별도) | 중소기업 3억엔, 국민사업 6000만엔

금리 | 첫 3년간 기준 금리 ▲0.9%, 4년째 이후 기준 금리

(금리인하 제한액 : 중소기업 1억엔, 국민사업 3000만엔)



#### ● 평일 상담

일본정책금융금고 사업자금 상담 다이얼 : 0120-154-1785

오키나와 진흥개발 금융금고 용자 제 2부 중소기업 용자제 2반 : 098-941-1785

#### ● 토일·공휴일 상담

일본정책금융금고 : 0120-112476(국민생활사업), 0120-327790(중소기업사업)

오키나와 진흥개발 금융금고 : 098-941-1795

### ■ 특별이자 보급제도



■ 신청 접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. 지급요건이나 신청수속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면 즉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
▶ 일본정책금융금고 등의 「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」을 받은 개인사업자(사업성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) 등에 대하여 이자보급을 보장하므로써 자금용통지원을 실시 합니다.

이자 보급 기간 | 대출 후 처음 3년간

이자 보급 대상 상한 | 중소기업 1억엔, 국민사업 3000만엔



#### ● 중소기업 금융·금부금 상담창구

0570-783183 (평일·휴일 9:00~17:00)